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
번호

3007

한신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성북구1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한신 의원입니다.
- 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☐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- 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해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☐ 또한,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상위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- ☐ 이에 본 조례안은 ‘피학대동물’의 정의를 규정하고,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

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려 합니다. 마지막으로, 동물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☐ 아무쪼록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☐ 감사합니다!!